

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단108586 판결 [매매대금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종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김지환

변 론 종 결 2020. 11. 5.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16세조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 답 569㎡(이하 ‘이 사건 종토’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5. 3. 9. 접수 제32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 대표자는 F이었는데, 2014. 1. 1. F의 아들인 피고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다. F은 2014년경 이 사건 종토를 매도하여 제실을 건축하고 매매대금은 원고를 위해 쓰자고 제안하여 원고 종중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는 원고 대표자로서 2014. 7. 30. G에게 이 사건 종토를 매매대금 7,740만 원에 매도하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8.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종토 매도금 6,500만 원 중 상석 및 인건비를 제외한 5,800만 원 상당을 2018. 12. 말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9. 2. 17.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 H을 선출한 후 F과 피고가 위 서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F과 피고를 형사고발하거나 법적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결의를 하고 2019.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2019. 2. 17.자 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H의 F과 피고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F이 이 사건 종토를 매매하여 매매대금 7,740만 원을 보관 하던 중 2016. 6. 28. 제실 건축을 위해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740만 원은 F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종중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원고 대표자는 F이고 고소인 H은 원고 대표자라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9. 5. 27.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종중원 35명 중 29명이 참석한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 대표자로 H을 선출하고 이 사건 종토 매매대금에 관하여 F과 피고를 형사고발 또는 법적심판을 받게 하자는 결의를 다시 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2019. 10. 29.자 준비서면에서 ‘위 2019. 6. 8.자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중원 전부에 대한 소집 통지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2. 21.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위 임시총회 소집은 원고 종중원 중 향렬이 가장 높은 I과 D의 후손 3개파에서 향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종중원인 J, K, L이 2019. 12. 초순경 연락 가능한 종중원 79명에게 임시총회 일시와 장소 및 종중회칙심의, 임원선출 등 안건을 알려 소집한 것이다.

자. 2019. 12. 21. 15:00경 원고 종중원 24명이 참석하여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원고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H을 원고 대표자로 선출하고, 위 2019. 6. 8.자 종중총회 결의를 추진하는 등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0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H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원고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2019. 2. 17.자 및 2019. 6. 8.자 임시총회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고, 2019. 12. 21.자 임시총회 역시 허위의 사실관계를 소집통지서에 적시하였고, 사전 통지 없이 종중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규약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도 못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2. 17.자 및 2019. 6. 8.자 임시총회는 소집권자나 일부 종중원들에게 연락을 누락한 문제 등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어 보이나, 원고의 2019. 12. 21.자 임시총회 소집은 소집권한 있는 자가 연락 가능한 종중원 모두에게 연락하여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지적하는 위 2019. 12. 21.자 임시총회 소집의 문제점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집통지서(갑

제10호증)에 ‘그간 종중 종토 매도대금 반환 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쌍방간(H, F)에 정당한 종중회의 없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니 종중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정당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권리 등록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집통지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개최되었던 종전 2019. 2. 17.자나 2019. 6. 8.자에 소집절차 등 하자가 있어 그 결의를 추인하기 위하여 개최된 총회임을 알 수 있고, 임시총회 개최의 필요성과 취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소집통지서에 판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뿐이며, 판결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사전 통지 없이 종중 규약을 개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소집통지서에 ‘종중회칙심 의’가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관한 사전통지는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는 위 2019. 12. 21.자 임시총회 안건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의 각 안건은 출석한 종중원들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종중 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그것이 없을 때에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관습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일반관습과 다른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를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원고가 갑 제4호증으로 2019. 2. 17. 제정된 회칙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채택된 회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2019. 12. 21.자 임시총회에서 채택한 종중규약 이전에 원고가 성문화된 종중규약 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7. 30. G에게 이 사건 종토를 매매대금 7,74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처분대금을

원고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사적으로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정리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종토 매매대금 7,740만 원을 보관하다가 2016. 6. 28. 제실 건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F이 그 나머지 3,74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종토 매매대금 중 일부는 원고와 당초 약속한 취지에 따라 사용되었고, F이 남은 돈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에게 이 사건 종토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